

특수교사 자격제도 상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문헌 및 법률 검토

임 이 삭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김 지 연*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하, 특수교사)에 대한 교원자격제도 상의 명칭인 ‘특수학교 교사’의 적절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교사의 자격제도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연혁 법령 분석, 논문과 보고서 등의 문헌 분석 및 현행법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특수교사 자격제도의 명칭은 1953년부터 1963년,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특수교사’로, 그 외의 시기는 ‘특수학교 교사’로 사용되었다. 둘째, 특수교사 자격제도 상 명칭을 연구의 중심 주제로 다룬 문헌은 없었고, 특수교사 양성체제 및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의 하위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현행 명칭인 ‘특수학교 교사’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 주장과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왔으며, 문헌마다 입장은 상이하였다. 셋째,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①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의 자격 명칭, 특히 정교사 및 준교사의 명칭이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내지 장소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 명칭이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의 지위와 전문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특수학교 교사’ 자격 명칭의 재정립을 위해 특수교사를 별도의 교사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격 명칭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현재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지위와 전문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의 명칭이 정비되어야 한다.

〈주제어〉 특수교사, 특수교육 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제도, 명칭

* 교신저자(jykim@knsu.ac.kr)

I. 서론

2023년 현재 한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25,599명의 교원은 특수학교에 10,146명(39.6%), 특수학급에 13,888명(54.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565명(6.1%)이 소속되어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교육부, 2023).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청)에 소속을 둔 이들 교사들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뿐만 아니라 병원, 가정, 시설 등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장애와 장애 정도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의 교원자격제도에 따른 현행 명칭은 ‘특수학교 교사’이다.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넘어서고(2023년 현재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80,467명, 73.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29,236명, 26.7%)(교육부, 2023), 일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2000년, 3,885명; 2010년, 5,608명; 2015년, 7,397명; 2020년, 12,079명; 2023년, 13,888명)(교육부, 2000;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부, 2015, 2020, 2023)에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부여된 ‘특수학교 교사’라는 자격 명칭은 타당한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였다.

가령,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상정해볼 수 있다.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교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권의 확립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범위와 방식 등이 구체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에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실 밖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12조 6항). 이 조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 현실적으로 그 장소는 특수학급이 될 수밖에 없고 통합교육을 위해 설치된 특수학급이 분리교육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신진영, 2023.9.19.).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1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분리교육을 조장할 수 있고, 더욱 역설적이게도 이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 교사’라고 명명되는 전문가에 의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의 ‘자격(qualification)’이란 ‘공인 또는 인증 과정의 정형화된 결과’이고 ‘자격제도’란 ‘인간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자격증’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로 자격이 자격제도를 통해 외부화, 외현화된 것이다(백옥선, 2018; 이동임, 2004). 그렇다면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정해진 양성기관에서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스템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수교육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으며, 이후 자격증 상에서 이를 외현화 및 외부화하였는데, 그 결과가 ‘특수학교 교사’라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외국의 경우 교사 자격 제도 내 특수교사의 자격 명칭은 각 국가의 교육 체제나 교사 양성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특수교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특수교사(Education Specialis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기초 특수교사(Level I Education Specialist Credential) 자격 내에 ‘집중 지원 요구(extensive support needs)’, ‘경도 및 중도 지원 요구(mild to moderate support needs)’, ‘유아특수교육(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농과 난청(deaf and hard of hearing)’,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s)’로 구분하여 자격을 명명하고 있다(California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 2022).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학교 교사’라는 명칭과 유사하게 ‘특별지원학교 교사(特別支援学校教諭)’로 자격이 명명되고 있는데, 세부 교육 영역(예, 자립교과)이나 장애유형(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및 병약자)이 추가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특별지원학교 교사는 초, 중, 고, 또는 유지원 보통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教育職員免許法 第三条, 附則(平成一八年六月二一日法律第八〇号) 第五条, 別表第一). 핀란드는 ‘특수교육교사(Special needs teacher)’와 ‘특수교육교사(유아교육과 보육)(special education teac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로 자격명칭이 사용되고 있다(Finnish Teaching Qualifications Decree, 1998).

한편, 특수교사의 자격제도 상의 명칭이 명문화된 1953년(김원경, 1989) 이후로 국내 특수교육계에서 특수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나경은, 2019) 특수교사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1998년 이후 특수교사 교사양성 체제에 관한 37편의 연구를 분석한 나경은(2019)은 ‘장애영역에 따른 특수교육 교사양성에 관한 연구’, ‘국외 특수교육 교사양성에 관한 연구’, ‘학교급별 특수교육 교사양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교사의 자질과 자격’으로 관련 연구들을 유목화하였고, ‘특수교육 교사의 자질과 자격에 관한 연구’는 8편이 이에 속하였다. 이 중에서 특수교사의 자격에 관한 연구는 3편 정도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자격의 기준 개선(정해동, 2007), 자격기준(김운중, 2009), 자격제도 및 양성(정정진, 2002)을 다루고 있어 특수교사의 자격제도 상의 명칭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교사’라는 현재의 특수교사의 교원 자격 제도상의 명칭의 타당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수교사 자격 제도 명칭의 역사적 변화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는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사 자격 제도 명칭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규정의 방법과 내용은 적절한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문헌 분석

1) 연혁 법령

특수교사 자격 제도의 명칭을 다루고 있는 관련 법령의 연혁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내 연혁법령 검색 창에서 법령명, 법령본문, 조문내용, 조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의 모든 부분에서 특수교사(특수교육 교사, 특수학교 교사)를 최초 검색하여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시스템 내의 ‘법령 체계도’ 기능을 사용하여 연결된 법령, 대통령령 및 부령을 확인하였다. 이후 각 법령의 제·개정 시기를 확인하고 제·개정에 따른 법령, 대통령령 및 부령을 확인하는 방식을 반복하였다(예, 1953년의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1963년의 전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교원자격검정령).

2) 논문 및 보고서

특수교사의 자격제도 상의 명칭을 다루고 있는 국내 출판된 학술지 논문, 학회 발표 논문 및 기관(예, 국립특수교육원)의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 수집을 위해 PRISMA의 문헌 선별 절차(Page et al., 2021)를 따랐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 국내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수교사 자격제도 명칭을 다루고 있는 문헌을 검색하였다. 처음에는 ‘특수교사(특수교육 교사, 특수학교 교사)’, ‘명칭’, ‘자격’, ‘자격증’ 등을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으나 검색된 논문의 수가 미미하여 ‘양성체제’, ‘양성과정’, ‘교사자격’, ‘제도’, ‘교원양성’, ‘자격기준’ 등으로 검색의 범위를 넓혀 특수교사 양성과 자격제도와 관련된 문헌 전체를, 문헌의 연도는 제한하지 않고 수집하였다. 최종 8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각 문헌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여 특수교사 자격 제도 명칭을 다루고 있는 6편의 문헌을 확인하고 저자, 발표년도, 연구방법, 지지하는 명칭과 그것에 대한 이유를 기본틀로 하여 분석하였다.

2. 법적 검토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연구자가 특수교사의 자격제도 상의 명칭을 규정한 현행 법령의 내용 및 구조를 확인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명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후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자격 제도상 명칭을 주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의 양성제도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자격 제도 중 자격기준과 장애유형의 표기는 본 연구의 범위는 아니지만 교사자격 명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일부 내용을 포함하였다.

Ⅲ. 특수교사 자격제도 명칭의 사적(史的) 문헌 고찰

1. 특수교사 자격 제도 명칭의 연혁

1) 연구결과

특수교사 자격이 법규로 명문화된 것은 1953년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이 처음 제정되면서부터이다(김원경, 1989). 이 법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며 특수교사는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특수교사 자격 검정을 거치거나 특수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문교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정의하였다(동법 별표 제2호). 특수교사의 명칭은 ‘국민학교 특수교사’, ‘중학교 특수교사’, ‘고등학교 특수교사’로 명명하고, 국민학교 특수교사는 실과, 음악, 미술, 보건, 맹, 농아, 신체교육, 정신교정, 언어교정 과목에, 중학교 특수교사는 음악, 미술, 체육, 맹, 농아, 신체교육, 정신교정, 언어교정 과목에 수여하며 이를 교사자격증에 명시하도록 하였다(「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문교부령 제39호).

1963년 사범학교제가 폐지되고 국민학교 교사는 교육대학에서,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도록 교육법이 개정(법률 1582호)되었다. 교사의 자격제도 또한 변화를 맞았는데, 「교육공무원법(법률 1622호, 1963.12.16., 일부개정)」에서는 정교사,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로 교사자격을 구분하였고, 정교사, 준교사, 교도교사의 경우에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학교 급을 구별하여 각 학교 급별 명칭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었다(동법 별표 2). 이러한 변화에 따라 특수교육을 담당하던 교사의 명칭이 종전 ‘특수교사’에서 ‘특수학교 교사’로 변경되었고, ‘대학 또는 초급 대학을 졸업하고 재학 중 소정의 특수학교 교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을,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를, 소정의 자격, 경력, 강습을 받은 자에 대해 특수학교 교도교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1964년 제정된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649호)에서는 특수학교의 초등 과정 교사는 맹·농아를 표시하고, 중학과 및 고등과는 맹·농아의 표시 뒤에 괄호를 통해 중등학교의 과목명을

특수교육논총

표시하도록 하였다(세부 내용은 <표 3> 참조). 이후 특수교육 교사의 명칭은 ‘특수학교 교사’로 유지되어 왔고, 1969년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특수학교 교사 초등의 경우 종전의 맹과 농아 외에 정신박약과 신체장애가 추가 신설되면서(대통령령 제3742호) 장애유형별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김병하 외, 1997; 김원경, 1989).

<표 1> 최초의 특수교사 자격의 명칭과 기준

학교별 명칭 및 구분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정교사 (1급)		생략	생략	생략
정교사 (2급)		생략	생략	생략
준교사		생략	생략	생략
특수교사	자격 기준	1. 중학교 특수교사, 고등학교 특수교사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특수교사 자격 검정을 받은 자	1.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중학교 특수교사 자격 검정을 받은 자 ① 실업과학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② 예능과, 보건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1.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국민학교 특수교사 자격 검정을 받은 자 ① 실업과학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② 예능과, 보건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자격증 표시 (수여 과목)	고등학교 특수교사	중학교 특수교사 (음악·미술·체육·맹·농아·신체교육·정신교정·언어교정)	국민학교 특수교사 (실과·음악·미술·보건·맹·농아·신체교육·정신교정·언어교정)
	양호교사	생략	생략	생략

출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별표 제2호,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문교부령 제39호, 1954.11.11.) 제6조

하지만 1973년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중등학교 표시과목에 ‘특수교육, 시청각교육, 전자계산, 철도운전, 철도업무’가 추가되는데, 이 규정에 의거 ‘특수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정교사(특수교육)’이라는 자격 명칭이 함께 사용되게 된다(대통령령 제6832호, 별지 제2호 서식)(<표 2> 참조). 이로 인해 1974학년도에서 1976학년도까지 단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생들은 『중등학교 2급정교사(특수교육)(부전공표시과목)』로 표시된 자격증을 수여받게 되었

다(김원경, 1989; 김병하 외, 1997). 이는 당시 중등교원을 양성하던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특수학교 교사’ 자격만으로는 취업 기회가 희소하여 여타 사범대 졸업자들과 동일하게 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취업 기회 제공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김병하 외, 1997).

〈표 2〉 1973년 교원자격검정령의 중등학교 ·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표

학교별	자격별	과목별
중등학교	정교사 (1급 · 2급 준교사)	국어 · 사회(일반사회 · 윤리 · 역사 · 지리) · 수학 · 과학(물리 · 화학 · 생물 · 지학) · 체육 · 교련 · 음악 · 미술 · 외국어(영어 · 독일어 · 불란서어 · 중국어 · 에스파니아어 · 일본어) · 가정 · 간호 · 공업 · 토목 · 건축 · 기계 · 화학기계 · 자동차 · 전기 · 전기공학 · 화공 · 응용화학 · 야금 · 염색 · 금속용접 · 광산 · 채광 · 방직 · 염직 · 섬유 · 요업 · 도자기 · 통신 · 유선 · 무선 · 조선 · 공예 · 실내장치 · 도안 · 전자 · 농업 · 임업 · 축산 · 원예 · 잠업 · 농업공장 · 농업토목 · 농화학 · 수의 · 상업 · 수산 · 어로 · 제조 · 중식 · 항해 · 기관 · 농업기계 · 농촌지도 · 식품조리 · 식품공업 · 의류 · 위생 · 임상병리 · 한문 · 특수교육 · 시청각교육 · 전자계산 · 철도운전 · 철도업무
특수학교	교사	맹 · 농아 · 정신박약 · 신체장애 비고: 1. 특수학교의 초등과는 맹 · 농아 · 정신박약 · 신체장애로 표시하고, 특수학교의 중등과 및 고등과는 맹 · 농아 · 정신박약 · 신체장애의 표시 다음에 ()를 만들어 중등학교란의 과목별로 표시한다.

출처.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6494호, 1973.2.8., 일부개정) 별지 제2호서식.

이후 ‘특수교육’ 표시과목은 1978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서 폐지되게 되는데(문교부령 제422호), 교원양성대학의 전공과정과 중등교과목 분류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설명된다(김병하 외, 1997). 한편 동규칙 [별지 제12호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표]에서는 특수학교 교사의 초등과 중등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표시과목)(맹 · 농아 · 정신박약 · 신체장애)』만을 명시하여 초등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김병하 외, 1997). 이러한 혼선은 1982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문교부령 제507호)에서 정리가 되며, 초등과 중등이 구분되어 명시되고 장애영역(맹 · 농 · 정신박약 · 지체부자유)이 추가되며 중등은 표시과목이 부가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유치원 과정이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최초로 추가되었고 장애영역의 명칭이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장애영역별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로 구분되며, 중등의 경우 표시과목이 부가되어 발급되게 되었다(교육부령 제655호). 2000년부터는 모든 특수교사 자격에 장애영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특수학교 정교사(유치원 · 초등 · 중등)정교사(2급)(중등은 표시과목)’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어 오

특수교육논총

날날에 이르고 있다(「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61호). 본 장에서 밝힌 특수교육 교사 자격 명칭의 주요 연혁은 <표 3>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3> 특수교육 교사 자격제도 명칭의 주요 연혁

주요 연도*	명칭	자격증 자격증 표기 유형† (대표 예)	근거
1953	특수교사	· 국민학교 특수교사(실과·음악·미술·보건·맹·농아·신체교육·정신교정·언어교정) · 중학교 특수교사(음악·미술·체육·맹·농아·신체교육·정신교정·언어교정) · 고등학교 특수교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 1953.4.18., 제정)/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시행세칙(문교부령 제39호, 1954.11.11. 제정)
1963 · 1964	특수학교 교사	· 초등: 특수학교 교사(맹·농아) · 중학과 및 고등과: 특수학교 교사(맹·농아)(과목)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463호, 1963.12.5., 전부개정)/ 교원원 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649호, 1964.2.26., 제정)
1969	특수학교 교사	· 초등: 특수학교 교사(맹·농아·정신박약·신체장애) · 중학과 및 고등과: 특수학교 교사(맹·농아)(과목)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 3742호, 1969.1.22., 일부개정)
1970 · 1973	특수학교 교사/ 중등학교교사	· 초등: 특수학교 교사(맹·농아·정신박약·신체장애) · 중등과: 특수학교 교사(맹·농아·정신박약·신체장애)(과목) · 중등학교 정교사(특수교육)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 5332호, 1970.9.18., 일부개정)/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 6494호, 1973.2.28., 일부개정)
1978	특수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사(표시과목)(맹·농아·정신박약·신체장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문교부령 제422호, 1978.1.27., 일부개정)
1982	특수학교 교사	· 국민: 특수학교 교사(맹·농·정신박약·지체부자유) · 중등: 특수학교 교사(표시과목)(맹·농·정신박약·지체부자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문교부령 제507호, 1982.6.23., 전부개정)
1994	특수학교 교사	·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 국민: 특수학교 교사(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 중등: 특수학교 교사(표시과목)(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교육부령 제655호, 1994.9.26., 일부개정)
2000~	특수학교 교사	·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 초등: 특수학교 정교사 · 중등: 특수학교 정교사 표시과목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교육부령 제761호, 2000.1.28., 일부개정)

주. * 관련 법령 제·개정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시행일 및 하위 법령 제·개정 및 시행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름

2. 특수교사 자격제도 명칭 논의에 대한 문헌 검토

특수교사 자격제도 명칭에 대한 논의는 소수의 특수교육 관련 문헌(연구 보고서, 학술지논문, 학술대회 발표 논문 포함)에서 확인되었는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특수교사 자격제도 상의 명칭을 다룬 문헌 분석

저자 (발표연도)	학술지 (발행사)	연구방법	문헌에서 지지하는 명칭	지지 명칭에 대한 이유
김승국 (1995)	특수교육 논총	양적연구 (설문)	특수교육 교사 또는 특수교사	· 연구 참여자의 ‘특수학교 교사(또는 특수교사)’에 대한 응답률 높음 · 특수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 배치될 경우 ‘특수학교 교사’는 부적절함
김병하 외 (1997)	국립특수 교육원	문헌연구	특수학교 교사	· ‘특수교육 교사’는 교과 담당으로 인식될 수 있음 · 특수교육 교장(감)은 업무 담당으로 여겨질 수 있음 · ‘특수교육 교사’로 변경 시 현행 체계에서 학교종별 비명시로 인해 혼란 초래 · ‘특수학교 교사’가 특수학급에 배치 시 특수학교 배치와 차이가 없음 · 명칭은 법리상의 문제이므로 현행 명칭 유지
김영옥 외 (2002)	특수교육학 연구	문헌연구	특수학교 교사	· ‘특수교육’은 광의로는 교육의 한 분야, 협의로는 교육이 방법이자 영역임
김삼섭* (2003)	한국특수 교육학회			· 교장(감)의 경우 ‘특수교육 교장(감)’은 성립될 수 없는 명칭임
정정진 (2003)	한국특수 교육학회	문헌연구	특수교육 교사	· ‘특수’란 ‘일반’과 대응관계의 용어이므로 업무나 교과 담당 교사로 인식될 소지가 적음 · ‘특수학교’는 한정적·구체적이지만 ‘특수교육’은 포괄적·보편적임
정해동 (2007)	특수아동 교육연구	문헌연구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교원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짐 · 자격증 상에서는 ‘특수학교 교사’로 사용해야 함

* 김삼섭(2003)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김삼섭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김영옥 외(2002)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문헌으로 간주하였음

초기 김승국(1995)의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교사와 관련 전문가 116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사의 양성체제와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특수교사의 명칭에 대한 의

견이 포함되었다. 설문 결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였으나(교사의 41.7%와 전문가의 15%), ‘특수교육 교사 또는 특수교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교사의 33.5%와 전문가의 65%), 현행 ‘특수학교 교사’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교사의 14.2%와 전문가의 15.0%). 저자는 ‘특수학교 교사’라는 명칭은 특수학교에만 특수교육 교사가 배치되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특수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 특수교육 교사가 배치되고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특수학교 교사’는 ‘특수교육 교사’ 또는 ‘특수교사’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97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된 ‘특수학교 교사 양성체제 개선방안(김병하 외, 1997)’에서는 ‘특수학교 교사’라는 명칭은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으므로 그대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첫째, ‘특수교육 교사’라고 사용할 경우 중등학교의 ‘물리교육 교사’나 ‘국어교육 교사’ 등의 교과 담당교사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점, 둘째, 교장과 교감의 경우 ‘특수교육 교장·교감’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고, 이 경우 일반학교 교감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보다 일반학교 교무담당 교감이나 생활담당 교감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특수교육 교사·교감·교장’으로 사용될 경우, 초등학교 교사·교감·교장, 중등학교 교사·교감·교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의 체계에서 학교종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수학교 교사’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것과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의 차이가 없고, 특수학교가 존재하는 한 특수교육 교사들의 영역확보와 권익을 위해 ‘특수학교 교사’로 불리어야 하고, 명칭은 법리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하였다.

김영옥, 김동연, 김삼섭(2002)과 김삼섭(2003) 또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행 ‘특수학교 교사’가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그 근거로 첫째 ‘특수교육’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의 한 분야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교육의 한 방법 또는 영역이며, 둘째, 교사 자격만을 고려한다면 ‘특수교사’라고 칭하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교장 및 교감의 경우 ‘특수교육 교감’, ‘특수교육 교장’이라는 명칭은 성립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2003년 ‘한국특수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특수교육 교사의 양성체제’에 대한 정정진의 발표(정정진, 2023)에서는 ‘특수’란 ‘일반’과 대응 관계의 용어이기 때문에 ‘생활담당’이나 ‘국어교육’과 같은 업무나 교과 담당 교사로 인식될 소지가 적고, ‘특수학교’는 한정적이고 구체적이지만 ‘특수교육’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므로 ‘특수교육 교사’라는 명칭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해동(2007)은 그간의 ‘특수학교 교사’ 명칭에 대한 논의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없게 되었다고 제시하였다.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서는 ‘특수교육교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명칭은 영·유아특수교육 교사, 초등특수교육교사, 중등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교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교사 자격증에 관하여 사용될 때

는 현행과 같이 ‘특수학교 교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헌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된 5개의 문헌에서 현행 ‘특수학교 교사’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특수교육 교사’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김승국(1995)의 양적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문헌연구로 진행되었다. 2개의 문헌은 ‘특수학교 교사’를, 2개의 문헌은 ‘특수교육 교사’를 지지하였고, 1개의 문헌은 ‘특수교육 교사’를 지지하지만 2007년 개정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교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IV. 현행 특수교사 자격제도 상의 명칭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수학교 교사’ 자격과 관련한 현행 법제 구조

특수교사 자격제도 명칭을 둘러싼 현행 법제 구조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초·중등교육법」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학교’를 두고 있고(제2조 제4호, 제55조), 유아교육법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학교’를 두고 있다(제15조). 특수학교와 별개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6조).

2) 교원 및 교사의 종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종류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되고(제19조 제1항 제1호), 이 중 교사는 <그림 1>과 같이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구분된다(제21조 제1항 전단).

이와 같은 교사의 분류는 각 교사의 전문성 및 그와 관련한 학교에서의 역할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분류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대신 정교사 또는 준교사의 분화된 자격의 하나로 ‘특수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준교사’라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논총

자격 학교별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실기교사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자격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1급·2급)	사서교사 (1급·2급)	보건교사 (1·2급)	영양교사 (1급·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림 1〉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교사 자격 기준 구조

주.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9. 27., 일부개정) [별표 2]와 유아교육법(법률 제19737호, 2023. 9. 28., 일부개정) [별표 2]를 재구성함

3) ‘특수학교 교사’ 자격 명칭

「초·중등교육법」은 ①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②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게 교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제21조). 이 중 위 ①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 「초·중등교육법」 [별표2]이고, ②의 자격증에 관하여 정한 것이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이다.

위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가령 위 표([별표2])에 따르면 보건교사(1급)의 자격요건은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인데, 이 자격기준은 해당 교사가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보건교사’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 해당 교사의 전문성 및 교육 분야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중등학교 보건교사’, ‘초등학교 보건교사’, ‘특수학교 보건교사’와 같이 구분하여 칭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기관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정교사 및 준교사의 경우, 배치될 학교의 종별(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따라 각각 다른 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가령 정교사 2급 자격을 갖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학력,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각각 다르다. 이는 각 종별의 학교가 갖는 교육과정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결과적으로 ‘정교사’ 및 ‘준교사’라는 자격 명칭만으로는

해당 자격이 갖는 전문성이나 교육 분야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와 같이 학교의 종별로 구분하여 칭하여야 비로소 해당 교사 자격의 전문성 및 교육 분야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마치 교사의 자격(증)이 배치될 학교의 종별에 귀속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 앞에 ‘특수학교’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하위 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역시 위와 같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현행 ‘특수학교 교사’ 자격 명칭의 법리적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특수교사를 별도의 교사의 종류로 분류하지 않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로 보아 ‘특수학교 정교사’라는 명칭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교사의 자격은 해당 교사가 담당할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증의 명칭에는 배치될 학교의 종류가 아니라 담당할 교육과정의 종류가 표시되는 것이 분류 체계상 바람직하다. 교육의 장소 내지 기관에 불과한 ‘학교’의 종류가 교사 자격의 명칭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초등학교 정(준)교사’, ‘중등학교 정(준)교사’라는 명칭도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초등교육과정(「초·중등교육법」 제38조)과 중등교육과정(「초·중등교육법」 제41조, 제45조)을 각각 배타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그러한 명칭만으로도 해당 자격의 구분되는 성격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다. 반면 ‘특수학교’는 특정 교육과정을 배타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수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반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도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사’라는 자격 명칭은 그 전문성이나 담당 교육과정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외의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예,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특수학급). 그러다보니 ‘특수학교 교사’라는 용어는 실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지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의식한 것인지, 특수교육과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특수학교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사’와 같은 별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교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또한 「장애아동 복

특수교육논총

지지원법」(이하 ‘장애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여야 할 교사로, ‘특수교사’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사람’으로 본다.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교사’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다(〈표 5〉 참조).

〈표 5〉 현행 법령 내 특수교육 교사 관련 용어

용어	정의(또는 해설)	법규명	최초 도입 시기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 관련 자격 기준에 해당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받은 사람	초·중등교육법	1963. 12. 6.
특수교육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5. 25.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2011. 8. 4.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14. 5. 20.

결국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서 새로 도입하고 있는 개념들은 용어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특수교사 자격의 명칭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 추가로 정의되지 않아도 좋았을 개념들로 여겨진다.

한편, 특수교육 관련 법규 이외에도 교육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나 행정규칙에서도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 명명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은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특별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 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각 시·도는 모법의 특수교육교원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교육 교사,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용어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칭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례 등에서는 특수교사, 특수교육교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6〉 현행 교육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행정규칙 내 특수교육 교사 관련 용어

자치법규(·행정규칙)명	용어	최초 도입 시기
전라북도	특수학교(급) 교사	1994. 12. 26.
제주특별자치도		2010. 9. 1.
충청북도	특수교육 교사	2009. 4. 17.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원	2008.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2009.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2010.
세종특별자치시		2012. 7. 2.
전라남도	특수교육 담당 교원	2008. 12. 18.
인천광역시		2009. 3.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특수교사	2015. 11. 24.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특수교사	2020. 1.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특수교사	2021. 9. 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특수교육교원	2023. 9. 1.

3. ‘특수학교 교사’ 자격 명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특수교사 자격의 명칭을 둘러싼 문제의 출발점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별도의 교사 종류로 분류하지 않고 정교사 및 준교사의 분화된 자격 중 하나로 규정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 명칭의 재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별도의 교사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1) ‘특수교육 교사’(가칭)라는 별도의 분류를 두고 자격을 부여하기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교사’라는 별도의 분류를 두고 해당 분류에 ‘특수교육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교사의 분류에 ‘특수교육 교사’를 포함하고, 같은 법 [별표2]에 ‘특수교육 정교사(1급)’, ‘특수교육 정교사(2급)’ 및 ‘특수교육 준교사’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세부사항은 〈표 7〉 참조).

특수교육논총

〈표 7〉 「초·중등교육법」의 교원 자격 내 ‘특수교육 교사’의 별도 제시(안)

현행	변경 제시안
제21조(교원 자격)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제21조(교원 자격)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및 특수교사(1급·2급·준교사) 로 나누되,

[별표 2]

자 격 학 교 별	정교사(1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자 격 학 교 별	정교사(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자 격 학 교 별	준교사		전문 상담 교사 (1급)		전문 상담 교사 (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자 격 학 교 별	사서 교사 (1급)	사서 교사 (2급)	실기 교사	보건 교사 (1급)	보건 교사 (2급)	영양 교사 (1급)	영양 교사 (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별표 2]

자 격 학 교 별	정교사(1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자 격 학 교 별	준 교 사	전문 상담 교사 (1급)	전문 상담 교사 (2급)	특수 교육 교사 (1급)	특수 교육 교사 (2급)	특수 교육 교사 (준교사)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자 격 학 교 별	사서 교사 (1급)	사서 교사 (2급)	실기 교사	보건 교사 (1급)	보건 교사 (2급)	영양 교사 (1급)	영양 교사 (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변경된 부분을, 취소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삭제된 부분을 나타냄

2) 현행 분류를 따르되 명칭을 ‘특수교육 정교사(준교사)’로 변경하기

또 다른 방안으로, 특수교육 교사를 정교사 및 준교사의 분화된 자격 중 하나로 그대로 두되, 그 명칭을 ‘특수교육 정교사’, ‘특수교육 준교사’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다른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자격 명칭 역시 학교별이 아니라 과정별을 기준으로 하고 ‘초등교육 정교사’, ‘중등교육 정교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표 8〉 참조).

〈표 8〉 초·중등교육법의 교원 자격 내 ‘특수교육 교사’로 변경 제시(안)

현행								변경 제시안									
[별표 2]								[별표 2]									
자 학 교 별		정교사(1급)						자 학 교 별		정교사(1급)							
자 학 교 별		정교사(2급)						자 학 교 별		정교사(2급)							
자 학 교 별		준교사		전문상담 교사(1급)		전문상담 교사(2급)		자 학 교 별		준교사		전문상담 교사(1급)		전문상담 교사(2급)			
자 학 교 별		사서 교사 (1급)	사서 교사 (2급)	실기 교사	보건 교사 (1급)	보건 교사 (2급)	영양 교사 (1급)	영양 교사 (2급)	자 학 교 별		사서 교사 (1급)	사서 교사 (2급)	실기 교사	보건 교사 (1급)	보건 교사 (2급)	영양 교사 (1급)	영양 교사 (2급)

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변경된 부분을 나타냄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자격제도 상의 명칭인 ‘특수학교 교사’의 적절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의 자격제도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연혁 법령 분석을 통한 명칭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확인하였고, 관련된 학문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현행법의 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법제 구조 확인, 명칭의 적절성 검토 및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교육 교사 자격제도의 명칭은 1953년부터 1963년,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특수교사’로, 그 외의 시기는 ‘특수학교 교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특수교육 교사 자격 명칭을 연구의 중심 주제로 다룬 문헌은 없었고, 일부 문헌에서 특수교육 교사 양성체제 및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의 하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문헌들은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판되었고 대부분 ‘특수학교 교사’라는 현행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과 그 논거를 다루고 있었으며, 문헌마다 입장은 상이하였다. 셋째, ‘특수학교 교사’ 자격 관련 현행 법제 구조를 검토한 결과, ①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의 자격 명칭, 특히 정교사 및 준교사의 명칭이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내지 장소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 명칭이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의 지위와 전문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수학교 교사’ 자격 명칭의 재정립을 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별도의 교사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격 명칭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 ‘특수학교 교사’라는 자격 명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경되어야 함을 명칭의 연혁과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 논란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자격제도 명칭의 법제 구조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지위와 전문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의 명칭이 정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 도출 과정에서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의 자격 명칭을 중심으로 현행 ‘특수학교 교사’의 적절성을 다루었다. 하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 및 교장의 명칭과 관해서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김병하 외, 1997; 김영옥 외, 2002)에서는 ‘특수교육 교사’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은 주요 근거로 ‘특수교육 교장(교감)’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들었다. 저자들은 ‘특수교육 교장(교감)’은 성립될 수 없는 명칭이고, 학교종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의 영역 확보와 교사 권익을 위해 ‘특수학교 교사’라고 명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특수교육에서 교감과 교장 자격 소지자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특수학교에만 배치되고 있고, 현행 체제에서는 초등학교 교장(감), 중등학교 교장(감)과 동일한 체계로 특수학교 교장(감)이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교장(감)의 자격 명칭을 이유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지위와 전문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본 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의 자격 명칭을 ‘초등교육 정교사’, ‘중등교육 정교사’로 변경한다면 교장(감)의 명칭 또한 자연스럽게 ‘초등교육 교장(감)’, ‘중등교육 교장(감)’, ‘특수교육 교장(감)’이 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에서 교감이나 교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일반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특수교육 교감(장)이 더욱 적절한 명칭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학교 내에서의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영역을 확보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명칭을 주로 다루다 보니,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자격 명칭은 소홀하였다. 현재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 명칭과 기준은 「유아교육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자격 명칭과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유치원 특수교사’는 유치원의 교장·교감으로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이들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자격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공정한 자격 획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홍은숙, 박계신, 김현숙, 2022). 영아 분야의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고 있으나(「특수교육법시행령」, 제13조) 장애영아 교육을 위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남경옥, 이은정, 신현기, 2015;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6). 게다가 현재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 체계의 통합, 교육부, 2023. 7. 28.)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유보 통합 이후의 교사자격 정비와 함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장애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교사 자격 명칭과 제도 등이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격제도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명칭의 법리적 적절성 검토 및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법적 측면 이외에 명칭에 대한 교원단체, 교육부, 학계 등의 의견이나 입장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학교 교사’ 명칭에서 사용된 ‘특수학교’가 법령에서 정의하는 특수학교(‘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제55조)가 아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모든 학교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으므로 용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 동안 사용되어 온 특수교사 명칭의 교원자격제도 상 명칭을 법리적 관점에서 다루다보니, 특수교사 명칭과 관련된 특수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과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향후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특수교사들을 적절하게 명명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표시는 문헌분석 대상인 문헌임.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제정 1994. 12. 9. 규칙 제354호).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정 2009. 1. 2. 규칙 제569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제정 2020. 1. 6. 조례 제6409호).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정 2009. 2. 18. 규칙 제607호).

교육공무원법(제정 1953. 4. 18. 법률 제285호).

교육공무원법(전부개정 1963. 12. 5. 법률 제1463호).

교육부 (203. 7. 28).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교원자격검정령(제정 1964. 2. 26. 대통령령 제1649호).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 1969. 1. 22. 대통령령 제3742호).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 1970. 9. 18. 대통령령 제5332호).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 1973. 2. 28. 대통령령 제6494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1978. 1. 27. 문교부령 제422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전부개정 1982. 6. 23. 문교부령 제507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1994. 9. 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2000. 1. 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제정 1954. 11. 11. 문교부령 제39호).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 통계. 저자.

교육부 (2000). 특수교육 통계. 저자.

교육부 (2015). 특수교육 통계. 저자.

교육부 (2020). 특수교육 통계. 저자.

교육부 (2023). 특수교육 통계. 저자.

광주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정 2008. 12. 15. 규칙 제404호).

*김병하, 김승국, 김영환, 김원경, 이유훈, 정동영 (1997). 특수학교 교사 양성체제 개선방안. 국립특수교육원.

*김삼섭 (2003). 특수교육 교사 양성의 현재와 미래.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23-54). 한국특수교육학회. 서울.

*김승국 (1995). 특수교육교사 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특수교육논총, 12(4), 1-28.

*김영옥, 김동연, 김삼섭 (2002). 특수교육 교원 양성의 표준적 모형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7(1),

101-130.

- 김운중 (2009).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개선방안. *교육종합연구*, 7(3), 29-50.
- 김원경 (1989). 특수교육 교원 인사행정의 개선. *특수교육논총*, 6, 1-43.
- 나정은 (2019). 특수교육 교사양성 체제에 관한 연구 분석. *교육방법연구*, 31(1), 187-207.
- 남정옥, 이은정, 신현기 (2015). 장애영아 대상 교육적 서비스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0(3), 169-194.
-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전부개정 2009. 5. 25. 규칙 제538호).
-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제정 2010. 2. 9. 규칙 제502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4. 5. 20. 법률 제12618호).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0호).
- 백옥선 (2018).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2008. 12. 3. 규칙 제561호).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0. 9. 1. 규칙 제782호).
-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제정 2012. 7. 2. 규칙 제11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제정 2021. 9. 23. 조례 제1760호).
- 신진영 (2023. 9. 19.) 학생생활지도 지침,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아주경제.
- URL: <https://www.aju-news.com/view/20230913105439114>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3. 9. 28. 법률 제19737호).
- 이동임 (2004).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제정 2009. 3. 31. 규칙 제475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2011. 8. 4. 법률 제11009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정 2012. 8. 3. 대통령령 제24016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 5. 25. 법률 제8483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22. 10. 18. 법률 제18992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06호).
-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2008. 12. 18. 규칙 제566호).
-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제정 1994. 12. 26. 규칙 제324호).
- 정정진 (2002). 특수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향. *한국교원교육연구*, 19(1), 83-111.
- *정정진 (2003). 특수교육 교사의 양성체제.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51-79). 한국특수교육학회. 서울.
- *정해동 (2007). 특수교육 교사 자격기준 개선 방안. *특수아동교육연구*, 9(4), 171-191.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10. 8. 20. 규칙 제103호).

특수교육논총

- 조운경, 김수진, 송영희 (2017).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의 시행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5개 기관 유형 특수교사 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16(1).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 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타법개정 2010. 8. 24. 규칙 제529호).
-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제정 2009. 4. 17. 규칙 제570호).
- 홍은숙, 박계신, 김현숙 (2022).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경험. *유아특수교육연구*, 22(3), 1-30.
- California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 (2022). *Education Specialist Instruction Credential Requirements for Teachers Prepared in California for the Preliminary and Clear Credentials*.
[www.ctc.ca.gov/credentials/leaflets/Ed-Specialist-Instruction-Cred-\(CL-808CA\)](http://www.ctc.ca.gov/credentials/leaflets/Ed-Specialist-Instruction-Cred-(CL-808CA))
- Finnish Teaching Qualifications Decree (986/13.12.1998).
-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Systematic Reviews* 10(89).
- 教育職員免許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四百十七号).

Abstract

Literature and Legal Review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the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Lim, Issac(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Kim, Jiyeon*(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rm “special school teacher” under the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for educators responsible for special educ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special education teachers. **Method:** The study involved a literature review of historical legislation, studies, and reports, alongside a legal review of current legislation. **Result:** Several key findings emerged. First, the designation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varied over time, with “special teacher” used from 1953 to 1963 and from 1973 to 1978, while “special school teacher” was employed during other periods. Second,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specifically addressing the title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stead, it is often treated as a secondary topic in studies focusing on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training system and curriculum. Evidence has been presented both for and again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term “special school teacher,” and each document had a different position. Third,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governing the qualifications of special school teachers was examined, issues were discovered, and legal solutions were proposed to address them. **Conclusion:**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current designation “special school teacher” for qualifications is not definitive and should be adjusted to align with evolving societal requirements. Additionally, the identification of issues within the legal framework prompted the proposals for solutions.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o revise the designation for teacher qualifications to more accurately reflect the status and expertise of teachers currently engaged in special education.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teacher, Special school teacher, Special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Designation

게재 신청일 : 2024. 01. 03

수정 제출일 : 2024. 01. 25

게재 확정일 : 2024. 01. 31

* Corresponding author (jykim@knsu.ac.kr)